

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

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○ 공고기간 : 2023.10.26. ~ 2023.11.08.

○ 대 상 자 (인적사항)

일련번호	성 명	면허번호	정지기간
1	오*은	전북 07-0337**-**	2023.10.01. ~ 2024.01.08.

공고일 : 2023년 10월 26일

세종남부경찰서장 (인)